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펀드코드 : 65654]

| 투자 위험 등급 | | | | | |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
|----------------|----------|----------------|----------|----------|----------------|---|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원본 손실 위험, 시장 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해외주식전용집합투자증권관련 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국가 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정보는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의3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S&P 500(USD)*95% + 콜금리*5%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 |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모투자신탁 명칭</th> <th colspan="4">주요 투자전략</th> <th>투자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td> <td colspan="4">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td> <td>100% 이하</td> </tr> </tbody> </table> | 모투자신탁 명칭 | 주요 투자전략 | | | | 투자비중 |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 | | |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투자신탁 명칭 | 주요 투자전략 | | | | 투자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 | | |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비용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비용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보수</th> <th>판매보수</th> <th>동종유형 총보수</th> <th>총보수 비용</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택 - 오프라인(A1)</td> <td>납입금액의 1.000%</td> <td>1.6150</td> <td>0.7500</td> <td>1.7500</td> <td>1.6988</td> <td>271</td> <td>448</td> <td>630</td> <td>1,013</td> <td>2,083</td> </tr> <tr> <td>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 - 보수체감(C1)</td> <td>없음</td> <td>2.3650</td> <td>1.5000</td> <td>1.8500</td> <td>2.3744</td> <td>241</td> <td>478</td> <td>710</td> <td>1,169</td> <td>2,429</td> </tr> <tr> <td>수수료선택 - 온라인(A-e)</td> <td>납입금액의 0.500% 이내</td> <td>1.2400</td> <td>0.3750</td> <td>1.2900</td> <td>1.3214</td> <td>184</td> <td>323</td> <td>467</td> <td>770</td> <td>1,631</td> </tr> </tbody> </table>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수수료선택 - 오프라인(A1) | 납입금액의 1.000% | 1.6150 | 0.7500 | 1.7500 | 1.6988 | 271 | 448 | 630 | 1,013 | 2,083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 - 보수체감(C1) | 없음 | 2.3650 | 1.5000 | 1.8500 | 2.3744 | 241 | 478 | 710 | 1,169 | 2,429 | 수수료선택 -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00% 이내 | 1.2400 | 0.3750 | 1.2900 | 1.3214 | 184 | 323 | 467 | 770 | 1,631 |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선택 - 오프라인(A1) | 납입금액의 1.000% | 1.6150 | 0.7500 | 1.7500 | 1.6988 | 271 | 448 | 630 | 1,013 | 2,0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 - 보수체감(C1) | 없음 | 2.3650 | 1.5000 | 1.8500 | 2.3744 | 241 | 478 | 710 | 1,169 | 2,4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선택 -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00% 이내 | 1.2400 | 0.3750 | 1.2900 | 1.3214 | 184 | 323 | 467 | 770 | 1,6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2024.07.31 현재)

*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주식형) | | | | 운용 경력 년수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 나진아 | 1986 | 책임운용역 | 15개 | 2,904억원 | -4.41% | -4.22% | 1.62% | 2.14% | 8년 6개월 | |
| | 강재명 | 1995 | 부책임운용역 | 3개 | 74억원 | 11.33% | 9.73% | | | 1년 9개월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글로벌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 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시장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해외주식전용 집합투자증권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의3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관련 위험 |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되나 채권 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투자 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p>해외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환 해지형 하위펀드는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기준통화인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변동에 대한 환 해지를 실행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제약 요인들에 의해 부분 환 해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 해지하는 금액: 이 금액은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성, 자산배분의 변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이나 부분 판매 또는 외국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의 배당수입은 환 해지 대상이 아니므로 환위험에 노출됩니다. 2. 환 해지할 통화의 유동성 및 해지 비용 3. 외환시장의 붕괴 또는 일상적인 통제수준을 넘는 외환시장의 충격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관련 법령 제한 또는 규제 변화 등 5. 환 해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p>환 해지는 펀드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해지 수단이 없는 경우 환율의 불리한 변동은 펀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고 거래상대방위험(장외거래의 경우)에 노출됩니다.</p> <p>※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는 미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해지비용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의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 주식 평가금액의 80% 수준을 한국 원화 대비 환해지를 실행코자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에서도 원화, 해당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표시통화 및 투자한 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부분 환해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등의 통화로 거래되는 미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모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따라 환해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때 자투자신탁별로 환해지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에서도 원화, 투자신탁 기준가격 표시통화 및 투자한 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부분 환해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p> <p>※ 환해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국가 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매입방법 | 가. 17시 이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D+3)의 기준가격을 적용 |
| 판매방법 | 가. 17시 이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D+4)의 기준가격으로 제6영업일(D+5)에 지급 |

| | |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기준 가격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전환절차 및 방법 | <p>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한 경우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 및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1)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p>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상기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2) 종류 A-u,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u,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 A-u, A-u2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위 전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전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3) 펀드 간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 A-u 수익증권에 관하여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대상 펀드 및 전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중 "전환형 구조"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중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종류 A-u2 까지 있는 경우 "종류 A-u2 또는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및 "펀드 간 전환 (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전환절차 및 방법 |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 A-u2 수익증권에 관하여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대상 펀드 및 전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중 “전환형 구조”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중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종류 A-u 까지 있는 경우 “종류 A-u2 또는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및 “펀드 간 전환 (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상기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집합투자 업자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모집(매출)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효력발생일 | 2024년 09월 04일 | 존속 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 colspan="3">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선취</td> <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수수료미징구</td> <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 rowspan="4">판매 경로</td> <td>온라인(e)</td> <td colspan="2">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 colspan="2">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온라인슈퍼(s)</td> <td colspan="2">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직판(직판)</td> <td colspan="2">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 rowspan="5">기타</td> <td>보수체감</td> <td colspan="2">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 </tr> <tr> <td>개인연금</td> <td colspan="2">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퇴직연금</td> <td colspan="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고액</td> <td colspan="2">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고액,랩</td> <td colspan="2">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수수료미징구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직판(직판) |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고액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고액,랩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판(직판) |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보수체감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액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액,랩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 기타 | 전환가능1 신한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간에 전환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전환가능2 신한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간에 전환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